

‘종교계와 함께하는 시정협력 및 종교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
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공모(2차)’
지 원 신 청 서 접 수

종교계와 함께하는 시정협력 및 종교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‘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’ 공모(2차)계획을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8일

서울특별시장

추진근거

- 문화기본법 제13조(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)
-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(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)
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(총칙)~제3장(지방보조금의 교부 등)

공모대상 : 종교단체(※ 1차 공모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불가)

- 종교단체(불교, 개신교, 천주교, 원불교, 천도교, 유교, 민족종교 등)
- 각 종단·교단 본부(총무원, 산하기관 등), 일선 종교단체(교회, 사찰, 성당 등) 등
- 종교관련 유관단체 : 종교관련 연구기관, 언론기관, 사회단체 등

〈 종교단체 인정기준 :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인정 〉

- ①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- ②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스님, 목사, 신부 등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
- ③ 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%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

□ **공모분야**(※ '19.7월 이전에 개최되는 행사는 지원불가)

① **시정협력(종교계 사회공헌) 분야**

○ **공모취지**

- 시정분야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종교계 시민 참여행사를 지원하여 시정성과와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의 촉진 도모

○ **시정분야**

- 여성, 경제, 일자리, 복지, 교통, 문화관광, 환경, 안전, 건강, 다문화, 교육, 남북교류, 도시재생, 공원, 체육 등 서울시 각 부서단위의 정책목표

○ **공모지원 가능행사(예시) : 시정 각 분야를 주제로 하는 문화행사**

시정분야	행사주제(예시)
다문화	·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심제고를 위한 토크콘서트
환경	· 청소년 환경모니터링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
복지	· 쪽방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사업
건강	· 서울시와 함께하는 생명존중 이야기(자살예방)
남북교류	· 남북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어울림 한마당

② **종교문화예술 분야**

○ **공모취지**

- 종교계의 대중화된 문화예술 중 계승·발전이 필요한 행사를 지원하여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도모

※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시정협력 요소가 있는 행사 우대

○ **문화예술 범위**

-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함(문화예술진흥법상 정의)

○ **공모지원 가능행사(예시)**

- 음악회, 국악제, 무용제, 미술전,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

〈 공모지원 불가행사 〉

- 대시민 참여가 불가능한 종교인 내부행사(순수 종교행사)
- 문화 또는 문화예술적 요소가 없는 순수 봉사활동(행사)
- 서울시 타부서(산하기관 포함)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사
-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행사 등

〈 제외행사 예시 〉

행사명(예시)	제외사유
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	· 순수 종교행사에 해당
평화통일 기도 부흥회	· 순수 종교인 내부행사에 해당
연등회	· 서울시 별도지원 행사에 해당
연탄배달 자원봉사	· 순수 자원봉사 활동에 해당

지원규모 : 310백만원, 20건 내외(예정)

행사당 최대 지원금액 30백만원, 최소 지원금액 10백만원

- 단,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

지원항목 : 행사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
-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(정산시 불인정)
- 사고예방 및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배정 의무화
-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주관단체 운영경비(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 구입, 공과금 등) 등은 지원불가

지원조건

-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부담 확보 의무화(시비보조금의 10% 이상)
 - 자부담의 범위는 협찬금은 포함하되 국비, 구비, 행사수익금은 불포함
- ‘시정협력(종교계 사회공헌)’ 분야에 선정된 행사의 경우,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시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
- 시비보조금 지원은 사업계획 검토 후 70% 선금지급, 잔여 30%는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

□ 선정방법 :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

○ 선정기준

- 모든 지원대상 행사는 종교신자 외 일반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, 공간 및 장소, 행사내용 등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
- 공모분야(시정협력 분야, 종교문화예술 분야)별 공모취지에 적합한 행사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심의
- 시비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원대상 행사의 발전방향 및 그에 따른 실현방안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
- 기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

○ 심사항목(안)

기 준		심 사 항 목
정량 평가	① 행사개최 실적	- 기존 개최행사 : 최근 3년간 행사 개최결과 - 신규 개최행사 : 최근 3년간 유사행사 개최결과
	② 예산구성	- 시비보조금 신청금액 대비 자부담 비율(2019년 개최예정 행사)
정성 평가	① 행사비전 및 발전가능성	- 사업계획의 독창성과 구체성 · 공모취지에 맞게 독창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성이 있어야 함 - 시비보조금 지원을 전제한 행사 발전방향 및 그에 따른 실현방안
	② 종교인 등 신자 외 일반시민 참여도	- 다수 시민들의 문화향유 가능성(무료행사 비율 등) - 시간, 공간적 접근성(야외행사 비율 등) - 시민들의 직접 참여 정도(시민체험 프로그램 현황 등)
	③ 행사운영	- 운영인력과 운영조직 확보 등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 -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현실성 - 행사안전을 위한 노력
	④ 홍보	- 홍보 및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능력 - 홍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

□ 신청서 접수

- 공고기간 : '19. 5. 8.(수) ~ 5. 28.(화) / 20일간
- 접수기간 : '19. 5. 22.(수) 09:00 ~ 5. 28.(화) 18:00 / 7일간
- 접수방법 : 인터넷 신청·접수

-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(<https://ssd.wooribank.com/seoul>)

※ 「진행사업 공고」에서 사업신청 클릭 → 지원사업 등록(접수기간 내에만 접속가능)

○ 제출서류

-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- 신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
 - ※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단체는 지원불가
- 단체정관 1부
- 최근 3년간(2016~2018) 개최이력 실적증명 자료 각 1부
 - ※ 2019년 최초로 개최예정인 행사는 유사행사 실적증명 자료

〈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〉

- 모든 서류는 작성양식(A4용지 종 방향)에 작성(한글 워드로 작성)
 -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(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)
- 모든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
-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
- 모든 서류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수치로 표시
-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-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
 -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
 -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예산 배정 필수
 -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(지원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이행, 보조금으로 집행불가)

○ 심의위원회 개최 : '19. 6월초

○ 선정결과 발표 : '19. 6. 17.(월) 예정

- 심의완료 후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통보
 - ※ 별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

□ 유의사항

- ①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
- ②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(2016~2018년)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- ③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인·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
- ④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⑤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⑥ 심사 후 지원금액이 변경되어도 사업계획 제출시 제안한 자부담 비율 미만으로 변경은 불가하며, 선정된 후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- ⑦ 선정단체는 보조금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('19.6.19.(수) 예정)
- ⑧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선정단체가 부담함
- ⑨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제출한 최종 예산금액 대비 사업완료 후 실제 집행한 사업비가 축소될 경우, 축소된 비율만큼 정산 후 지급되는 30% 보조금에서 감액 지원
- ⑩ 민간보조사업자(종교단체)는 회계검사 필수 이행 및 정산 시 검사서 제출 의무
- ⑪ 사업계획 등 공모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- ⑫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서울시 의견에 따름
- 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문의처 : 서울시 문화정책과 이승헌 주무관(02-2133-2522)